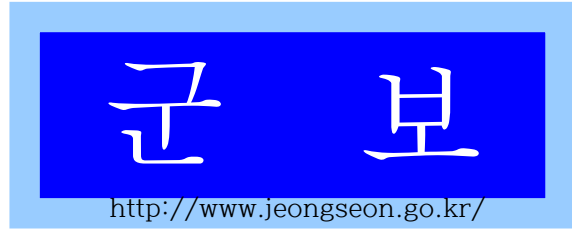
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545호 2020. 11. 16. (월)

【조 례】

- 정선군 조례 제2787호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2
- 정선군 조례 제2788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.....7
- 정선군 조례 제2789호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.....12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346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17
- 정선군 규칙 제134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24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조 례

제268회 정선군의회(2020. 10. 28.) 및 제10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10. 16.) 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1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787호

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300억원”을 “50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감안하여”를 “고려하여”로, “30억원이상을 기금으로 출연 하여야 한다”를 “출연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2020년 12월 15일”을 “2025년 12월 15일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춰 두고”로,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아니한 사항에 대하여”를 “않은 사항에 대해서”로, “「정선군 재무회계규칙」”을 “「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선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) ① (생략) ②기금은 3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있다. ③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30억원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 ④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.	제3조(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 500억원----- ----- ----- -----. ③----- - 고려하여 ----- 출 연할 수 있다. ④----- 2025년 12월 15일-----.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군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기능보강(리모델링)을 위한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	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- 각 호----- -----.

1. ~ 5. (생 략) 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 ② (생 략) ③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4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· 세출외로 관리한다.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2. (생 략) 3. 기타 군수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 항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 고) ① (생 략)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 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정선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제9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생 략)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.	1. ~ 5. (현행과 같음) 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 제3항----- -----. 제7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--- 각 호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그 밖에 ----- ----- -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 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 제1항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9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 (현행 과 같음) ②----- ----- 갖 춰 두고 ----- 증명서류-- -----.
---	--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
운용·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
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
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
기본법」 및 「정선군 재무회계
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으로 정한다.

제10조(관계규정의 준용) -----

--- 않은 사항에 대해서-----

「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
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
-----.

제11조(시행규칙) -----
- 관-----
-----.

☐ 제안이유

- 가. 정선군 청사건립기금의 조성목표액 변경
- 나.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
- 다. 관계규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

☐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조성목표액 변경 및 존속기한 연장(제3조)
 - 조성목표액 “300억” 을 “500억” 으로 변경
 - “3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.” 를 “출연할 수 있다.” 로 변경
 - 기금의 존속기한을 “2020년 12월 15일” 에서 “2025년 12월 15일” 로 연장
- 나. 재무회계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, “정선군 재무회계규칙” 을 “정선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” 으로 변경(제10조)

제268회 정선군의회(2020. 10. 28.) 및 제10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10. 16.) 에서 의결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1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788호

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(이하 “배우자수당”이라 한다) 매월10만원 지급 (단,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)

제5조제1항 중 “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”를 “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보훈청장”을 “지방보훈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참전공로수당”을 각각 “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”으로, 같은 항 중 “지급연령에 도달하는”을 “신청한”으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”을 “참전공로수당”으로,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 지급을 중단하며,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다른 시·군·자치구로 전출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거주목적”을 “거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3호의 “배우자수당”은 2021년 1월을 지급 개시월로 하여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사업)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· 4. (생략)	제4조(지원사업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수당(이하 “배우자수당”이라 한다) 매월10만원 지급 (단, 배우자가 재혼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.)</u> 4. ·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제5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군수는 매년 1월 중 <u>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</u> 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<u>지방</u>	제5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① ----- ----- <u>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보훈지청장</u> -----

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.

제6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공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.

②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)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.

③ 참전공로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
④ (생략)

제7조(지급의 중단) 군수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·군·자치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. 다만,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 읍·면장은

-----.

제6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-----
-----.

②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

-----.

③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
--- 신청한 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급의 중단) ----- 참전공로수당-----

----- 경우 지급을 중단하며, 배우자수당과 사망위로금은 다른 시·군·자치구로 전출한 경우 ---. -----
----- 거주

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목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,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.

-----.

☐ 제안이유

고령인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본인 사망 후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하여 배우자 수당 신설을 지속 요구하고 있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 유족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하여

-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의 생계유지 수당을 지급하며(안 제4조 제3호)
- 수당의 지급은 2021년 1월부터 개시함(부칙)

제268회 정선군의회(2020. 10. 28.) 및 제11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11. 13.) 에서 의결된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1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789호

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년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,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, 능력개발, 사회참여 확대,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정선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거주·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년활동”이란 청년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·법인(이하 “법인·단체”라 한다)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.
3. “청년관계법령”이란 청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 등을 말한다.
 - 가. 「지방자치법」
 - 나. 「청년기본법」
 - 다.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 - 라. 그 밖에 법률

제3조(적용범위) 청년활동 거점(據點, hot spot)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년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 등) ①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청년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② 모든 청년 및 법인·단체 등은 건전하고 생산적 청년활동의 활성화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,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해야 한다.

제5조(설치 및 위치) ① 군수는 군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, 교류, 자립기반, 경제활동 등을 할

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하여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(이하 “거점 공간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거점 공간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③ 거점 공간에는 군의 지역적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

1. 연구실, 회의실
2. 창업과 교류의 장(場)
3. 배움의 공간
4. 특화사업의 공방(工房)
5.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

제6조(업무 및 조직) ① 거점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청년, 법인·단체 등에게 청년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립기반 형성
2. 능력개발 프로그램
3.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
4. 경제 및 취업활동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

② 거점 공간에는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그 정원·채용, 근무·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③ 관리책임자는 거점 공간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, 청년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운영계획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거점 공간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 및 사용료 등) ① 군수는 청년들이 거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·계절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미리 군 인터넷홈페이지, 해당 공간의 게시판 등에 게재해야 한다.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청년, 법인·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군수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거점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년, 법인·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되, 청년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거점 공간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, 그 전문적·효율적 관리를 위하여

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·면별 자생 법인·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② 거점 공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거점 공간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정선군의회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.

[별표]

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구분·명칭 및 위치
(제5조제2항 관련)

구분	시 설 명 칭	위 치	비고
1	고한읍 거점 공간	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91-22	
2	사북읍 거점 공간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5 마을회관 2층	
3	남면 거점 공간	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도원2길 27 무릉복지회관 2층	
4	임계면 거점 공간	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84	

☐ 제안이유

정선군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활동 지원,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정착 기여 등 청년 성장의 토대 마련

☐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 (제1조, 제2조)

나.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(제4조)

다.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설치 및 위치 규정 (제5조)

라.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업무 및 조직에 관하여 규정 (제6조)

- 자립기반 형성, 능력개발 프로그램,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, 경제 및 취업활동 등의 지원업무 수행
- 관리책임자와 필요 직원을 두되, 그 정원·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함

마. 이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 (제7조)

- 청년, 법인·단체 등은 거점공간을 무료로 이용, 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

바.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 (제8조)

- 청년활동 거점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·면별 자생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수행실적 평가 등을 통해 재위탁 가능

규 칙

제10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10. 16.) 에서 의결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1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346호

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참전공로수당 신청” 을 “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신청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.

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.

제3조 중 “제3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” 를 “조례 제3조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” 로, “참전공로수당을” 을 “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을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신청시기 및 서식)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<u>참전공로수당</u>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,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	제2조(신청시기 및 서식) ① ----- <u>참전공로수당</u> 및 <u>배우자수당</u> 신청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조례 제6호제1항에 따라 <u>참전공로수당</u> 및 <u>배우자수당</u> 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<신설>	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<u>참전공로수당</u> 및 <u>배우자수당</u> 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.
<신설>	⑤ 조례 제7조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해야 한다.
제3조(지급시기) 제3조제1항에	제3조(지급시기) <u>조례 제3조에 따</u>

따른 참전공로수당 지급대상자
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
속한 달부터 조례 제6조제2항에
따라 참전공로수당을 지급한다.

른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수당
지급대상자 -----
----- 참전공로수당 및
배우자수당을 -----
-.

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참전등록번호					
참전유공자 공로·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					처리기간
					20일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. . . (남,여)	
	주소	강원도 정선군 읍(면) (우편번호 :)			
	연락처				
예금 계좌	금융기관명		예금주		
	계좌번호				
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공로·배우자 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정선군수 귀하					
신청인 제출서류	1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배우자수당 신청자) 3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주소 확인)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					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참전유공자 공로·배우자 수당 변경 신고서					처리기간
					즉시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. . . (남,여)	
	주소	강원도 . . . 시·군 (전화번호 . . .)			
변동사항	주소				
	계좌번호	예금주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
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정선군수 귀하					
신청인 제출서류	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주소 확인)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					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■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참전등록번호			
참전유공자 공로·배우자수당 (수령포기·자격회복) 신청서		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우편번호 : □□□□□□ 강원도 정선군 (전화번호)	
예금 계좌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
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공로·배우자수당의 (수령포기 · 자격회복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정선군수 귀하			
신청인 제출서류 (자격회복신청시)	1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배우자수당 신청 시)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 (자격회복신청시)	1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주소 확인)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			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신청인		(서명 또는 인)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□ 제안이유

가. 「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」 “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” 신설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

나.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“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” 신설에 따른 조문 변경

- “참전공로수당” 을 “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 수당” 으로 변경(제2조 제1항, 제3조)

나. 민원 서식 신설

-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 수당 신청자의 주소 및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(제2조 제3항)
- 참전공로수당 및 배우자 수당 신청자가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수령포기 신청서 제출(제2조 제4항)
- 전출로 인해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할 경우 자격회복 신청서 제출(제2조 제5항)
-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받음(별지 제1호 서식)

다. 조례개정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개정

- “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” 을 “신청한 날” 로 함(제6조 제3항)
- “제3조 제1항” 을 “조례 제3조” 로 함(제3조)

제10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0. 10. 16.) 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16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347호

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국보훈수당을” 을 “호국보훈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을” 로, “별지 제1호 서식의 호국보훈수당” 을 “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격여부” 를 “적격 여부” 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지 제2호 서식” 을 “별지 제2호서식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호국보훈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” 을 “수당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 읍·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,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대하여” 를 “대해서” 로, “아니한다” 를 “않는다” 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) ① 「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라 <u>호국보훈수당을</u>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<u>별지 제1호 서식의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</u>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<u>적격여부</u> 를 확인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그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2조(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<u>호국보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</u> 을 ----- ---- <u>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</u> ---- ----- ----- 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적격 여부</u> ----- ----- -----. ③ <u>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,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.</u> ④ <u>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당 지급의 중지를 회</u>

제3조(사망위로금 지급신청)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지급방법 등) ① 호국보훈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은 매월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)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5조(수당지급의 정지) 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사망, 타시·군·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. <단서 신설>

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수령포기를 신청해야 한다.

제3조(사망위로금 지급신청) ① -

----- 별지 제2호서식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지급방법 등) ① 수당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수당지급의 정지) ① ----

----- 다만,
주민등록 전출 신고 이후 다시
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 별지 제
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자격

②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8조, 제39조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8조, 제79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.

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때 해당 읍·면장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고,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.

② -----

----- 대해서-----
-- 않는다.

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서식]

호국보훈수당 변경 신고서					처리기간
					즉시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. . . (남,여)	
	주소	강원도 . . . 시·군 (전화번호 . . .)			
변동사항	주소				
	계좌번호	예금주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
「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 . . . 년 . . . 월 . . .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정선군수 귀하					
신청인 제출서류	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주소 확인)	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					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■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

참전등록번호					
호국보훈수당 (수령포기 · 자격회복) 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20일	
신청인	성명			생년월일	
	주소	우편번호 : □□□□□□ 강원도 정선군 (전화번호)			
예금 계좌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		
「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의 (수령포기 · 자격회복)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정선군수 귀하					
신청인 제출서류 (자격회복신청시)		1.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수수료 없음
담당공무원 확인사항 (자격회복신청시)		1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주소 확인)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					
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)

□ 제안이유

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민원 서식 신설

- 호국보훈수당 신청자의 주소 및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(제2조 제3항)
- 호국보훈수당 신청자가 수당 지급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수령포기신청서 제출(제2조 제4항)
- 전출로 인해 지급이 중지된 사람이 다시 관내로 전입할 경우 자격회복 신청서 제출(제5조 제1항 단서 신설)